

의안번호	2209055
의 퇴 인	김태호의원
회 답 일	2025.04.16.
추계번호	25C1686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 (기금의 사용)	○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함 10. 제30조의6에 따른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지원(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30조의6 (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의 지정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·장비·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여야 함(제1항) 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(제2항) ○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1조 (기금의 사용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0조의6 (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의 지정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의 지정과 국가의 수련센터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임
 - 참고로, 현행법은 권역외상센터의 지정(제30조의2)과 권역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(제30조의4)에 대한 규정만을 명시하고 있음
-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현행 지원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시점에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 -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“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”의 내역사업인 ‘외상학 전문인력 양성’사업을 통해 개정안에 따른 외상지도전문의와 외상수련 전임의의 인건비, 교육비 등¹⁾을 지원하였으나(2024년 기준 8억 8,800만원), 2025년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음²⁾
 - 이에 따라 고려대 구로병원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으나³⁾ 서울시의 예산 투입(5억원)으로 유지되었으며, 이후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8억 6,800만원을 확보하여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계획을 밝힘⁴⁾
 - 참고로, 현행법은 권역외상센터의 지정(제30조의2)과 권역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(제30조의4)에 대한 규정만을 명시하고 있음

1) 외상지도전문의에 대한 인건비 연간 1억 4,400만원(1인당), 외상수련전임의 인건비 8,400만원, 교육비 3,600만원(1인당)을 지원하고 있음

2)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동 내역사업의 지원 내용을 보건복지부 소관 타 세부사업인 “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”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외상학 분야 전문의와 수련전임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,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의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, 외상학 분야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(“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(보건복지위원회·여성가족위원회)”, 국회 예산정책처, 2024.10.)

3)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 중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친 5개 기관을 지정하였으나, 2024년 9월 기준으로 사업의 지원 대상인 외상지도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3군데로 한정됨. 다만, 이 중 고려대 구로병원 외의 외상수련기관은 이미 ‘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’사업을 통해 전문의의 인건비를 지원 받고있는 상황이므로 ‘외상학 전문인력 양성’사업 폐지는 구로대 구로병원에만 영향을 줌

4) “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2차 회의”, 2025.03.14.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- 기존 ‘외상학 전문인력 양성’ 사업은 외상수련 전임의 부족으로 예산의 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었으므로,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결정될 사업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